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5

제출연월일 : 2015. 9.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상위 법령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에 지방보조금을 명시하고 조례 개정(안 제3조)

나. 보조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소속 국장과 소속 부서장에서 홍보전산과장과 언론팀장으로 조례 개정(안 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제3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개 정 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15. 7. 9 ~ 7. 28

(3) 규제심사 : 심사 대상 규제 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행정영향 분석

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사업범위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언론사의 보조금을 원활하게 지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연구 및 주민과 쌍방향 소통하는 공감정보 제공 및 알권리 충족

나.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사업범위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이 차질없이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언론사의 건전한 지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를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조사업의 범위)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1.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2.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활동지원 사업
3.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제5조 제4항 “간사는 소속 국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부서장이 된다”를
“간사는 홍보전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언론팀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동작구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한다. 단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보조사업의 범위)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1.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2.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활동지원 사업 3.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1. ~ 5. (생 략)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국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부서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홍보전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언론팀장이** 된다.